

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(안) 검 토 보 고 서



총 무 위 원 회

[전문위원 박혜진]

목 차

1. 검토경과	1
2.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	1
가. 총괄	1
나. 세입예산(일반 + 기타특별회계)	2
다. 세출예산(일반 + 기타특별회계)	3
라. 세출예산(일반회계)	4
마. 기타특별회계	5
3. 부서별 검토의견	
□ 기획예산담당관	6
□ 전략담당관	8
□ 행정과	9
□ 인구교육과	11
□ 민원소통과	13
□ 재무과	14
□ 경제기업과	15
□ 문화관광과	18
□ 복지정책과	20
□ 행복나눔과	23
□ 보건정책과	27
□ 건강증진과	29

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(안)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4. 11. 22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24. 11. 22.

2.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

가. 총괄 - (예산안 P9)

(단위: 천원)

회 계 별	제3회 추가 경정 예산(안)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률 (%)
합 계	819,598,065	820,682,401	△1,084,336	△0.13
일반회계	765,409,758	766,329,490	△919,732	△0.12
특별회계	54,188,307	54,352,911	△164,604	△0.30

○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8,433만 6천 원이 감액(△0.13%)된 8,195억 9,806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음.

- ▶ 일반회계는 7,654억 97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1,973만 2천원이 감액(△0.12%) 되었으며,
- ▶ 특별회계는 541억 8,83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,460만 4천원이 감액(△0.30%) 되었음.

나. 세입예산(일반 + 기타특별회계) - (예산안 P10)

(단위: 천원)

구	분	제3회 추가 경정 예산(안)	기정 예산액	증 감 액	증감률 (%)
합	계	780,209,456	780,483,792	△274,336	△0.04
지	방 세 수 입	40,397,397	40,397,397	0	0.00
	보 통 세	39,911,065	39,911,065	0	0.00
	지 난 연 도 수 입	486,332	486,332	0	0.00
세	외 수 입	28,781,551	20,273,436	8,508,115	41.97
	경 상 적 세 외 수 입	14,668,594	10,647,579	4,021,015	37.76
	재 산 임 대 수 입	221,378	211,378	10,000	4.73
	사 용 료 수 입	2,887,078	2,858,278	28,800	1.01
	수 수 료 수 입	5,410,000	3,710,000	1,700,000	45.82
	사 업 수 입	65,000	52,900	12,100	22.87
	징 수 교 부 금 수 입	914,546	911,746	2,800	0.31
	이 자 수 입	5,170,592	2,903,277	2,267,315	78.10
	임 시 적 세 외 수 입	13,495,757	9,158,757	4,337,000	47.35
	재 산 매 각 수 입	132,000	132,000	0	0.00
	보 조 금 반 환 수 입	2,991,000	500,000	2,491,000	498.20
	기 타 수 입	9,333,757	8,326,757	1,007,000	12.09
	지 난 연 도 수 입	1,039,000	200,000	839,000	419.50
	행 정 제 재 · 부 과 금	617,200	467,100	150,100	32.13
지	방 교 부 세	322,319,000	331,219,000	△8,900,000	△2.69
조	정 교 부 금	30,966,000	32,108,000	△1,142,000	△3.56
보	조 금	245,941,716	245,318,118	623,598	0.25
보	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	111,803,792	111,167,841	635,951	0.57
	잉 여 금	34,586,063	34,443,965	142,098	0.41
	전 년 도 이 월 금	10,426,005	10,426,005	0	0.00
	용 자 금 원 금 수 입	1,694,468	1,200,000	494,468	41.21
	전 입 금	65,097,256	65,097,871	△615	0.00

※ 공기업특별회계 제외(39,388,609천원)

다. 세출예산(일반 + 기타특별회계) - (예산안 P20)

(단위: 천원)

부 서 별	제3회 추가 경정 예산(안)	기정 예산액	증감액	증감률 (%)
합 계	780,209,456	780,483,792	△274,336	△0.04
의회운영위원회	1,231,070	1,231,070	0	0.00
산업건설위원회	352,832,352	358,988,737	△6,156,385	△1.71
총 무 위 원 회	426,146,034	420,263,985	5,882,049	1.40
기획예산담당관	64,716,193	56,165,979	8,550,214	15.22
전략담당관	16,485,578	16,518,698	△33,120	△0.20
행정과	79,847,319	80,009,440	△162,121	△0.20
인구교육과	28,867,311	29,790,477	△923,166	△3.10
민원소통과	1,847,732	2,067,041	△219,309	△10.61
재무과	6,193,377	6,289,238	△95,861	△1.52
경제기업과	28,203,812	28,456,394	△252,582	△0.89
문화관광과	14,928,218	15,225,918	△297,700	△1.96
복지정책과	27,236,715	27,206,358	30,357	0.11
행복나눔과	128,917,534	129,255,579	△338,045	△0.26
보건소	16,473,036	16,511,281	△38,245	△0.23
읍면	12,429,209	12,767,582	△338,373	△2.65

○ 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58억 8,204만 9천원이 증액(1.40%)된 4,261억 4,603만 4천원으로 편성됨.

라. 세출예산(일반회계) - (예산안 P22)

(단위: 천원)

부 서 별	제3회 추가 경정 예산(안)	기정 예산액	증감액	증감률 (%)
합 계	765,409,758	766,329,490	△919,732	△0.12
의회운영위원회	1,231,070	1,231,070	0	0.00
산업건설위원회	342,450,392	349,242,788	△6,792,396	△1.94
총 무 위 원 회	421,728,296	415,855,632	5,872,664	1.41
기획예산담당관	64,716,193	56,165,979	8,550,214	15.22
전략담당관	16,485,578	16,518,698	△33,120	△0.20
행정과	79,847,319	80,009,440	△162,121	△0.20
인구교육과	28,867,311	29,790,477	△923,166	△3.10
민원소통과	1,847,732	2,067,041	△219,309	△10.61
재무과	6,193,377	6,289,238	△95,861	△1.52
경제기업과	24,880,343	25,132,925	△252,582	△1.00
문화관광과	14,928,218	15,225,918	△297,700	△1.96
복지정책과	26,142,446	26,121,474	20,972	0.08
행복나눔과	128,917,534	129,255,579	△338,045	△0.26
보건소	16,473,036	16,511,281	△38,245	△0.23
읍면	12,429,209	12,767,582	△338,373	△2.65

- 총무위원회 소관 **일반회계**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58억 7,266만 4천원이 증액(1.41%)된 **4,217억 2,829만 6천원**으로 편성됨.

마. 기타특별회계 - (예산안 P9, P24)

(단위: 천원)

회 계 명		제3회 추가 경정 예산(안)	기정 예산액	증감액	증감률 (%)
합 계		14,799,698	14,154,302	645,396	4.56
총 무 위 원 회		4,417,738	4,408,353	9,385	0.21
기	경제기업과	3,323,469	3,323,469	0	0.00
타	복지정책과	1,094,269	1,084,884	9,385	0.87
산 업 건 설 위 원 회		10,381,960	9,745,949	636,011	6.53

※ 공기업특별회계 제외(39,388,609천원)

-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938만 5천원이 증액(0.21%)된 44억 1,773만 8천원으로 편성됨.

3. 부서별 검토의견

□ 기획예산담당관

<세출예산>(예산서 P131)

(단위: 천원)

구 분	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	기정 예산액	증감액	증감률 (%)
일반회계	64,716,193	56,165,979	8,550,214	15.22

-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보다 85억 5,021만 4천원이 증액(15.22%)된 647억 1,619만 3천원으로 편성됨.

▶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음

- VR(실감콘텐츠)홍보영상 제작 등 ⇒ 20,000천원 감
- 예비비 ⇒ 23,440,296천원 감
- 차입금 이자상화 및 보조금 반환 ⇒ 8,989,490천원 감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⇒ 41,000,000천원 증

[주요 편성내용]

사 업 명	예비비 (p133, p4)
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여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 ○ [사업비] 10,962,201천원(군 10,962,201) ▶ <u>23,440,296천원 감</u> ○ [사업내용] 일반예비비, 재해·재난목적 예비비, 내부유보금 ○ [증감사항] 재정수요 대비 예산액 감소
검토의견	<p>☞ 예비비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세출예산에 편성하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금액을 말함. 예비비 제도는 예산 성립 후 변화한 여건 또는 정세 변동에 대응하여 예산 집행의 신속성을</p>

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**과도한 예비비 편성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**으로 편성 규모의 적절성 및 집행의 적절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.

☞ {참고}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조서

단위:천원

2023년 당초예산	예비비 결정액	집행액	이월액	불용액
42,583,441	6,218,093	4,164,259	938,828	1,115,006

- 2023년 당초예산에 42,583,441천원을 편성하였으나, 결정액은 6,218,093천원이며 **실 집행액은 4,164,258천원(9.7%)에 불과함.**

사업명	차입금 이자상환 및 보조금 반환 (p134, p5)
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국고·도비 보조금 사용 후 집행잔액, 발생이자 반납 ○ [사업비] 8,900,000천원(군 8,900,000) ▶ 8,989,490천원 감 ○ [사업내용] 국·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환금 ○ [증감사항] 실수요액으로 감조정
검토의견	<p>☞ 2024년 당초예산에 차입금 이자상환 및 보조금 반환에 32,000,000천원을 편성하였음. 실제 반환금액인 8,900,000천원보다 과잉편성(359%) 한 것은 예비비와 마찬가지로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발생시킴으로 적정 규모로 편성할 것을 권장함.</p> <p>☞ 또한 보조금의 과도한 반환은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않았거나, 불필요한 보조사업을 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꼭 필요한 사업에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.</p>

사업명	내부거리지출-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(p134, p6)
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○ [사업비] 41,000,000천원(군 41,000,000) ▶ 41,000,000원 증 ○ [사업내용] 일반회계에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
검토의견	<p>☞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, 제2항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을 조성할 수 있음. 이번 410억 원이라는 전출금은 어떤 사유로 전출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 한편, 지방재정은 균형재정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유재원의 발생은 효율적이지 못한 재정 운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. 410억원의 재원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확인이 필요함.</p>

□ 전략담당관

<세출예산>(예산서 P135)

(단위: 천원)

구 분	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	기정 예산액	증감액	증감률 (%)
일반회계	16,485,578	16,518,698	△33,120	△0.20

○ 전략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,312만원이 감액(△0.20%)된 164억 8,557만 8천원으로 편성됨.

▶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음

- 지방소멸대응 연계 공모기획 ⇒ 29,520천원 감
-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 교육 지원 ⇒ 3,600천원 감

[주요 편성내용]

사 업 명	지방소멸대응 정책 추진 (p135, p14)
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지역 인구활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특화형 사업 발굴 추진 및 지방소멸대응 관리 정책 적극 대응 ○ [사업비] 137,480천원(군 137,480) ▶ 29,520천원 감 ○ [사업내용] 지방소멸대응사업 공모를 위한 용역시행 ○ [증감사항] 사업비 집행잔액 감 조정

사 업 명	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 교육지원 (p137, p10)
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 지원으로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 ○ [사업비] 10,800천원(군 8,400 자 2,400) ▶ 3,600천원 감 ○ [사업내용]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(자부담 300천원) ○ [증감사항] 사업비 집행잔액 감 조정

□ 행정과

<세출예산>(예산서 P139)

(단위: 천원)

구 분	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	기정 예산액	증감액	증감률 (%)
일반회계	79,847,319	80,009,440	△162,121	△0.20

○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6,212만 1천원이 감액(△0.20%)된 798억 4,731만 9천원으로 편성됨.

▶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음

- 새마을군집기 유지 보수비	⇒	5,000천원 감	전액삭감
- 읍면 주민자치 학교, 간담회 등	⇒	9,992천원 감	예산액 대비 61.1% 감
- 주민자치 행사운영비	⇒	14,000천원 감	예산액 대비 50% 감
- 주민자치활성화 행사실비지원금	⇒	15,000천원 감	
- 국내외 교류 및 향우회 지원	⇒	20,667천원 감	예산액 대비 53% 감
- 거창군 통합 홈페이지 전면 개편	⇒	20,000천원 감	
- 공무원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	⇒	50,000천원 감	

[주요 편성내용]

사업명	민간단체 활동지원 (p141, p13)
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기여 ○ [사업비] 508,354천원(도 15,132, 군 493,222) ▶ <u>8,500천원 감</u> ○ [사업내용] 민간단체 법정운영비, 민간경상사업, 민간행사업비 등 지원 ○ [증감사항] 집행잔액 감액
검토의견	<p>☞ <u>새마을군집기 유지보수비 5,000천원을 대상지가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</u>하였음. 당초 예산 수립 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.</p>

사 업 명	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(p141, p15)
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○ [사 업 비] 54,838천원(군 54,838) ▶39,522천원 감 ○ [사업내용] 읍면 주민자치 교육 및 활동 지원, 군 주관 행사 추진 등 ○ [증감사항] 집행잔액 감 조정
검토의견	<p>☞ 사업비 집행률이 58.1%밖에 되지 않음. 여유 재원의 발생은 예산 편성 시 계획에 오류가 있었거나 소극행정으로 그만큼 지역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성이 요구됨.</p> <p>☞ 읍면 주민자치학교, 간담회 등은 예산액 대비 61.1%감, 주민자치 행사운영비 50% 감 편성 함</p>

사 업 명	국내외 교류 및 향우회 지원원 (p142, p16)
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친선도시 및 향우회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군정발전 기여 ○ [사 업 비] 18,333천원(군 18,333) ▶20,667천원 감 ○ [사업내용] 각종 교류 행사 운영, 참석자 실비, 연수공무원 체재비 등 ○ [증감사항] 집행잔액 감액
검토의견	<p>☞ 집행잔액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외 교류행사 참석자 보상금 8,000천원 전액 삭감으로 집행률 ZERO, 읍·면 자매우호도시 교류 행사 참석자 보상금 9,677천원 삭감(53.8% 감)으로 집행률이 46.2%에 불과함.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성이 요구됨.</p>

□ 인구교육과

<세출예산>(예산서 P145)

(단위: 천원)

구 분	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	기정 예산액	증감액	증감률 (%)
일반회계	28,867,311	29,790,477	△923,166	△3.10

○ 인구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2,316만 6천원이 감액(△3.10%)된 288억 6,731만 1천원으로 편성됨.

▶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음

- 첫만남이용권 ⇒ **44,000천원 증**
- 전입정착금 ⇒ **104,000천원 감**
- 거창 맞춤형 청년임대주택 건립 ⇒ **244,511천원 증** 국비 교부
- 도립거창대학 생활관 건립사업 ⇒ **1,000,000천원 감 전액 감액**
- 미래교육지구 운영-일반운영비 ⇒ **15,187천원 감**

[주요 편성내용]

사 업 명	출산 지원 (p147, p23)
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비용 지원을 통한 아이낳기 좋은 출생 환경조성 ○ [사 업 비] 453,000천원(국 294,600, 도 45,400, 군 113,000) ▶44,000천원 증 ○ [사업내용]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, 둘째이상 300만원(바우처) 지원 ○ [증감사항] 보건복지부 국비사업 '첫만남 이용권', 2024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
검토의견	⇒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44,000천원을 증액하였음.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, 그간 추진실적 확인이 필요함.

사 업 명	대학지원(도립거창대학 생활관 건립사업 (p149, p28))
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4인 1실 공동욕실 등 열악한 생활관 환경개선 ○ [사 업 비] 0천원(군비 0) ▶ 1,000,000천원 감 ○ [사업내용] 생활관 건립(기숙사 68실, 세탁실, 다목적실 등) ○ [증감사항] 학령인구 감소 및 도립거창대학 통합과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미교부로 사업비 감액
검토의견	<p>☞ 도립거창대학 생활관 건립사업은 총 30억원(2021~2025)의 예산이 소요되며, 2023년까지 20억원이 투입되었음. 투입된 예산에 대한 추진실적 확인이 필요함.</p>

사 업 명	미래교육지구 운영 (p149, p31)
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·협력하여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교육공동체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맞춤형 지역교육 발전체제 구축 도모 ○ [사 업 비] 132,159천원(군 132,159) ▶ 19,462천원 감 ○ [사업내용] 마을강사 양성 및 마을배움터 운영 등 ○ [증감사항] 홍보물 제작 수요 감소, 마을배움터(자율주제형) 1개소 사업포기 등 사업비 감액
검토의견	<p>☞ 집행잔액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교육지구 홍보물 제작 3,000천원 전액 삭감으로 집행률 ZERO, 미제작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.</p> <p>☞ 마을강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12,187천원 삭감으로 집행률이 52.43%에 불과함. 여유 재원의 발생은 예산 편성 시 계획에 오류가 있었거나 소극행정으로 그만큼 지역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성이 요구됨.</p>

□ 민원소통과

<세출예산>(예산서 P151)

(단위: 천원)

구 분	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	기정 예산액	증감액	증감률 (%)
일반회계	1,847,732	2,067,041	△219,309	△10.61

○ 민원소통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,930만 9천원이 감액(△10.61%)된 18억 4,773만 2천원으로 편성됨.

▶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음

-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일반 ⇒ 220,000천원 감

[주요 편성내용]

사 업 명	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일반 (p154, p40)
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면적감소 토지 조정금 지급 ○ [사 업 비] 450,000천원(군 450,000천원) ▶ 220,000천원 감 ○ [사업내용] 면적 증.감에 따른 토지 조정금 산정 및 징수.지급 ○ [증감사항] 집행잔액 및 지적재조사 1개지구 미완료로 조정금 미지급
검토의견	☞ <u>원노현 지구 사업이 지연된 사유</u> 는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함.

□ 재무과

<세출예산>(예산서 P155)

(단위: 천원)

구 분	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	기정 예산액	증감액	증감률 (%)
일반회계	6,193,377	6,289,238	△95,861	△1.52

○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9,586만 1천원이 감액(△1.52%)된 61억 9,337만 7천원으로 편성됨.

▶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음

- 주택 평가 ⇒ 54,000천원 감
- 재산 관리 ⇒ 10,528천원 감

[주요 편성내용]

사 업 명	주택 평가 (p157, p48)
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한 주택 특성조사 및 각종 경비 ○ [사 업 비] 106,380천원(군 106,380) ▶ 54,000천원 감 ○ [사업내용] 개별주택 특성조사 공무원 인건비 및 검증수수료 등 ○ [증감사항] 공무원 휴직(1명)에 따른 인건비 등 감액

사 업 명	재산 관리 (p159, p52)
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공유재산 및 공용차량 관리를 위한 경비 ○ [사 업 비] 61,222천원(군 61,222천원) ▶ 10,528천원 감 ○ [사업내용] 공유재산 및 공용차량 구입 및 운영 관리 ○ [증감사항] 공유재산 측량, 감정평가 등 수수료 감소, 물품 태그 구입 물량 감소, 부지 매입 집행 잔액 등 감액

□ 경제기업과

<세출예산>(예산서 P161)

(단위: 천원)

구 분	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	기정 예산액	증감액	증감률 (%)
계	28,203,812	28,456,394	△252,582	△0.89
일반회계	24,880,343	25,132,925	△252,582	△1.00
특별회계	3,323,469	3,323,469	0	0.00

○ 경제기업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,258만 2천원이 감액(△1.00%)된 248억 8,034만 3천원으로 편성됨.

○ 특별회계는 변동없음.

▶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음

-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 ⇒ 12,800천원 감
- 승강기산업체 근로환경개선 지원 ⇒ 15,000천원 감
- 거창승강기밸리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⇒ **25,575천원 증**
- 투자유치(자체) 투자유치 활동 보상금 ⇒ 14,000천원 감
- 기업지원 보조사업 ⇒ 16,000천원 감
- 거창한 예비창업 청년 지원사업 ⇒ 47,393천원 감
-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지원사업 ⇒ 4,800천원 감 **전액삭감**

[주요 편성내용]

사 업 명	승강기산업체 근로환경개선 지원 (p166, p64)
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승강기산업체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 복지 및 생산성 향상 ○ [사 업 비] 5,000천원(군 5,000) ▶15,000천원 감 ○ [사업내용] 복지 편익 장비 구입비 및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○ [증감사항] 실수요 반영 잔액 삭감
검토의견	<p>☞ 2024년 본예산은 30,000천원이었음. 3회 추경시 예산 5,000천원을 편성함. 이는 본예산 대비 25,000천원을 삭감함에 따라 83.3%를 감함. 본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.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성이 요구됨.</p>

사 업 명	거창승강기밸리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(p166, p65)
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거창승강기밸리 내 승강기 산업체의 인건비 부담 해소 및 청년일자리 신규 창출 기여 ○ [사 업 비] 25,575천원(국 7,750, 도 12,400, 군 5,425) ▶25,575천원 증 ○ [사업내용] 거창승강기밸리 청년일자리 지원사업(본 사업)을 통해 2년을 근로한 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○ [증감사항] 국도비 추가 편성에 따른 사업 추가 시행
검토의견	<p>☞ 2024년도 본예산은 15,000천원(3명) 편성하였으나, 2회 추경 시 국비 미교부로 전액 삭감함. 3회 추경에 예산이 신규로 편성함.</p> <p>☞ 실제 인센티브 지급대상자가 몇 명이며,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함.</p>

사 업 명	투자유치(자체) 투자유치 활동 보상금 (p166, p67)
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개선으로 경영애로 해소 ○ [사 업 비] 5,000천원(군 5,000) ▶14,000천원 감 ○ [사업내용] 기업 활성화 간담회 및 견학 등 참석자 보상, 기업유치 기여 민간인 보상 ○ [증감사항] 집행잔액 및 대상자 없음으로 삭감
검토의견	<p>☞ 세부 내용 중 기업유치 민간인 보상금 10,000천원이 전액 삭감됨.</p> <p>☞ 기업유치에 민간인 노력이 전혀 없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.</p>

사 업 명	기업지원 보조사업 (p167, p69)
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관내 기업 내실 강화 ○ [사 업 비] 61,000천원(균 61,000) ▶16,000천원 감 ○ [사업내용]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운반비용 지원사업, 시장개척 및 판로지원, 국내 전시(박람)회 참가지원 ○ [증감사항] 집행 잔액 및 수요없음으로 감액
검토의견	☞ 세부사업 중 AED지원사업 3,000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음.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.

사 업 명	거창한 예비창업 청년 지원사업 (p169, p75)
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예비 청년 창업가 발굴.배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○ [사 업 비] 32,462천원(균11,431, 도3,429, 균17,602) ▶47,393천원 감 ○ [사업내용] 창업 성공 후(3년차) 신규 채용 시 인건비, 주거비 등 지원 ○ [증감사항] 행정안전부 예산 조정에 따른 국도비 예산 변경 감액 편성
검토의견	☞ 당초예산 대비 59.34%가 감액으로 대상자가 4명에서 2명으로 절반이 줄었음. 회계연도 말에 사업비를 절반가량 줄여서 <u>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함.</u>

사 업 명	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(p170, p80)
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지역 LPG집단공급시설 설치료 연료비 절감 및 안전한 에너지이용 환경조성 ○ [사 업 비] 778,000천원(도 400,000, 균 378,000) ○ [사업내용]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, 공급배관 설치, 부대설비 설치 등 ○ [증감사항] 웅양면 죽림마을 사업비 증가에 따른 균비 예산 조정
검토의견	☞ 사업추진 시 <u>거창읍 사마마을 30여 세대, 웅양면 죽림마을 20여 세대로 당초 예산수립 시 사업대상자가 확정된 상황에서 웅양면 죽림마을의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.</u>

□ 문화관광과

<세출예산>(예산서 P173)

(단위: 천원)

구 분	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	기정 예산액	증감액	증감률 (%)
일반회계	14,928,218	15,225,918	△297,700	△1.96

○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,770만원이 감액(△1.96%)된 149억 2,821만 8천원으로 편성됨.

▶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음

- 문화도시 조성 추진 ⇒ 9,000천원 감
- 체류형관광 활성화 지원 ⇒ 13,000천원 감
- 문화재 관리 지원 ⇒ 100,000천원 감
-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 ⇒ 5,000천원 감

[주요 편성내용]

사업명	문화도시 조성 추진 (p176, p88)
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지역 기반으로 활동할 기획 전문 인력 양성 및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통한 공연문화 활성화 ○ [사업비] 51,000천원(군비) ▶ 9,000천원 감 ○ [사업내용] 토요일문화공연, 행복감성 버스킹 공연 등 2건 ○ [증감사항] 집행잔액 감액
검토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세부사업 중 행복감성 버스킹 공연은 10,000천원 중 6,000천원(60%)을 삭감함. ☞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지역 아마추어 예술인 공연무대 제공 및 공연 활성화를 위해 3개 팀이 10회를 공연한다고 계획하였음. 2024년 추진실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.

사 업 명	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(p176, p90)
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거창 특산품과 다양한 주류를 페어링한 젊은 감성의 축제 개최를 통해 트렌드에 적합한 관광콘텐츠 발굴 및 가조온천 관광지 활성화 ○ [사 업 비] 17,000천원(군비) ▶ 13,000천원 감 ○ [사업내용] 거창 특산품을 활용한 식음료 제공, 족욕 체험, 공연 ○ [증감사항] 집행잔액 감액
검토의견	☞ 당초 2회를 계획했는데 1회만 시행한 것은 소극행정 으로 보여짐. 예산 집행에 적극성이 요구됨.

사 업 명	문화재 관리 지원 (p177, p92)
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문화유산 및 주변시설의 상시관리 및 재해, 재난 발생 시 문화유산의 훼손 방지와 원상복구를 위한 긴급보수를 위함. ○ [사 업 비] 75,000천원(군비) ▶ 100,000천원 감 ○ [사업내용] 재난, 재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문화유산 긴급수리 ○ [증감사항] 집행잔액 감액
검토의견	<p>☞ 세부 사업 중 문화재 긴급보수비 100,000천원 중 62,000천원(62%)감액, 문화재 상시관리 사업비 60,000천원 중 38,000천원(63.3%) 감액하였음.</p> <p>☞ 긴급보수비의 경우 예측이 어려울 수 있으나 문화재 상시관리는 충분히 사업대상을 발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.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성이 요구됨.</p>

사 업 명	박물관 문화학교 운영 (p178, p100)
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문화유산 이해 증진과 박물관 사회교육 기능 강화 ○ [사 업 비] 5,000천원(군 5,000) ▶ 5,000천원 감 ○ [사업내용] 역사문화강좌 및 답사, 찾아가는 박물관 교육 ○ [증감사항] 집행잔액 삭감
검토의견	☞ 당초 2회를 계획했는데 1회만 시행한 것은 소극행정 으로 보여짐. 예산 집행에 적극성이 요구됨.

□ 복지정책과

<세출예산>(예산서 P179)

(단위: 천원)

구 분	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	기정 예산액	증감액	증감률 (%)
계	27,236,715	27,206,358	30,357	0.11
일반회계	26,142,446	26,121,474	20,972	0.08
특별회계	1,094,269	1,084,884	9,385	0.87

-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,097만 2천원이 증액(0.08%)된 261억 4,244만 6천원으로 편성됨.
-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938만 5천원이 증액(0.87%)된 10억 9,426만 9천원으로 편성됨.

▶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음

- 순직군경유족 명예수당(도비) ⇒ **4,650천원 증** (성립전)
- 자활근로 사업 ⇒ **165,000천원 증** (성립전)
-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 ⇒ **10,000천원 증**

[주요 편성내용]

사 업 명	보훈단체 지원 (p181, p103)
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단체와 회원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한 보훈대상자 예우 ○ [사 업 비] 1,373,239천원(도 4,650 군 1,368,589) ▶ 4,650천원 증 ○ [사업내용] 보훈단체 지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, 효도권 지급 등 ○ [증감사항] 순직군경유족 명예수당 도비 지원에 따른 예산 편성
검토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2024.9.24. 주례회의 시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서면보고 된 사항임. - 순직군경유족 31명, 지원금 50천원, 3개월 지급함

사업명	자활근로 사업 (p183, p109)
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나 저소득 차상위자에게 일자리(자활근로) 제공 ○ [사업비] 1,590,600천원(국 1,272,480, 도 95,436, 군 222,684) ▶165,000천원 증 ○ [사업내용]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(자활근로 대상자 인건비 등) 지원 ○ [증감사항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4년 자활근로사업 국·도비 변경 교부 통보에 따른 예산 증액 -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증가(월평균 자활근로자 수 70명 → 86명)
검토의견	☞ 2024.10.15. 주례회의 시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서면보고 된 사항임.

사업명	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 사업 (p184, p112)
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경남도 시범사업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·보건의료·돌봄·주거 등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○ [사업비] 343,000천원(도 102,900, 군 240,100) ▶ 증감 없음 ○ [사업내용] 3개 권역 통합돌봄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○ [증감사항] 2025년 종합사회복지관 유희공간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에 따라 리모델링비를 집기구입비로 재편성
검토의견	☞ 집기 구입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

사업명	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(p184, p113)
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연계·제공으로 복지제도 효과성·효율성 향상 ○ [사업비] 208,368천원(국 104,184, 군 104,184) ▶ 증감 없음 ○ [사업내용] 국비지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(공무직 6명) ○ [증감사항]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와 근로자 보험료 간 사업비 조정
검토의견	<p>☞ 3회 추경 편성 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, 고용산재보험료, 국민연금부담금,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이 줄어듦.</p> <p>이는 보험료, 연금부담금 등에 맞춰 인건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임</p> <p>☞ 당초 공무직의 경우 인건비 산출내역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하여 3회 추경 시 재원을 변경하고 있는 것은 <u>안일한 예산편성</u>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음</p> <p>☞ 예산 수립 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목적에 맞게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.</p>

사 업 명	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(p186, p116)
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각종 의료 현금급여비용 지원 ○ [사 업 비] 166,678천원(국 133,343, 도 33,335) ▶ 10,000천원 증 ○ [사업내용] 요양비, 장애인 보조기기, 본인부담 보상금, 환급금,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등 ○ [증감사항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4년 의료급여사업 국·도비 변경 교부에 따른 예산 증액 -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신청 증가(380건→410건)
검토의견	<p>☞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수요 증가로 10,000천원 예산 증액하였음. 2024년 추진실적 및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함.</p>

□ 행복나눔과

<세출예산>(예산서 P187)

(단위: 천원)

구 분	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	기정 예산액	증감액	증감률 (%)
일반회계	128,917,534	129,255,579	△338,045	△0.26

- 행복나눔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,804만 5천원이 증액(△0.26%)된 1,289억 1,753만 4천원으로 편성됨.

▶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음

-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지원 ⇒ 14,400천원 감
- 지역봉사 노인지도원 활동 ⇒ 10,000천원 감
- 경로당 신축 부지 정비사업 ⇒ 40,000천원 증 (성립전)
-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⇒ 206,343천원 감 (시군간 조정)
-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⇒ 49,798천원 증
-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⇒ 1,966천원 증 (성립전)
- 아이돌봄지원 ⇒ 390,000천원 감
-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⇒ 27,747천원 증
-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⇒ 185,067천원 증
- 부모급여 지원 ⇒ 233,846천원 증
- 어린이집 확충사업 ⇒ 60,000천원 증 (신규)

[주요 편성내용]

사 업 명	효도수당 지급 (p190, p125)
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도모 ○ [사 업 비] 300천원(군 300) ▶ 1,000천원 감 ○ [사업내용]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실제 거주하는 4대(代)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에 월 100천원 지급 ○ [증감사항] 지급 대상 없으므로 잔액 삭감
검토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가지만, 최근 핵가족화로 4대 이상이 같이 사는 가구가 거의 없음. ☞ 기준조건인 나이를 70세→65세로 또는 4대를 3대로 완화하여 가족공동체를 복원할 필요성이 있음.

사 업 명	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(p190, p127)
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도모 ○ [사 업 비] 1,193,904천원(국596,952, 도179,086, 군417,866)▶ 증감없음 ○ [사업내용]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○ [증감사항] 미등록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산 조정
검토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「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」 제3조 및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5조에 따라 지원대상은 설치신고한 경로당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현재까지 미등록 경로당은 제외되었음 ☞ 하지만 올해 정부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미등록 경로당에도 냉난방비, 양곡비, 위문품 등을 를 지원하기로 함 ☞ 거창군에서는 이와 관련한 「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」를 개정하여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함

사 업 명	경로당 신축 부지 정비사업 (p191, p130)
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신축을 위한 부지 정비 ○ [사 업 비] 40,000천원(조 40,000) ▶ 40,000천원 증 ○ [사업내용] 동변경로당 신축부지 정비공사

	○ [증감사항]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하반기 교부
검토의견	☞ 2024.9.24. 주례회의 시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서면보고 된 사항임. ☞ 2회 추경 시 동변할머니경로당 신축 부지 내 철거 문제로 당해 추진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40,000천원 전액을 삭감함

사 업 명	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(p193, p139)
내 용	○ [사업목적]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 요양.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○ [사 업 비] 1,755,809천원(국1,229,066, 도158,023, 군368,720) ▶49,798천원 증 ○ [사업내용] 월평빌라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○ [증감사항] 월평빌라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
검토의견	☞ 월평빌라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액된 내역 확인이 필요함

사 업 명	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(p195, p144)
내 용	○ [사업목적]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 개선과 자립기반 조성 ○ [사 업 비] 7,216천원(기 5,773, 도 443, 군 1,010) ▶1,966천원 증 ○ [사업내용]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지급 ○ [증감사항] 지원대상 증가로 예산증액
검토의견	☞ 2024.10.15. 주례회의 시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서면보고 된 사항임. ☞ 만 24세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0~1세 영아는 40만원, 2세 이상 자녀는 35만원 지급함

사 업 명	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(p196, p146)
내 용	○ [사업목적]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지원하여 양육부담을 경감 ○ [사 업 비] 146,000천원(도 43,800 군 102,200) ▶27,747천원 증 ○ [사업내용] 중위소득별 10% ~ 40%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○ [증감사항] 지원대상 증가로 예산증액(3,950명→4,866명)
검토의견	☞ 예산서 195페이지 만12세 미만 아동양육 가정에 아이 돌봄 인력을 파견하여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사업량 감소로 390,000천원이 감액되었음. ☞ 아이돌봄서비스 사업량은 감소되었는데 본인부담금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

사 업 명	부모급여 지원 (p198, p153)
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○ [사 업 비] 3,551,246천원(국 2,308,310, 도 621,468, 군 621,468) ▶ 233,846천원 증 ○ [사업내용]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부모급여 수당 지원 - 0~11개월 100만원, 12~23개월 50만원 ○ [증감사항] 지원대상 증가로 예산 증액
검토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부모급여 지급인원 증가로 예산을 증액하였음 ☞ 2024년도 추진실적, 향후 집행 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※ 2023년 12월 기준 0세 207명, 2024년 10월 기준 0세 237명임

사 업 명	어린이집 확충사업 (p201, p167)
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○ [사 업 비] 60,000천원(국 30,000, 도 15,000, 군 15,000)▶ 60,000천원 증 ○ [사업내용]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구입비 지원 ○ [증감사항] 신규편성
검토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더 샹2차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로 기자재 구입은 연내 추진할 계획이며, 리모델링 공사비 50,000천원은 명시 이월함 ☞ 리모델링 시설비와 기자재 구입내역의 확인이 필요함

□ 보건정책과

<세출예산>(예산서 P207)

(단위: 천원)

구 분	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	기정 예산액	증감액	증감률 (%)
일반회계	11,975,772	12,081,692	△105,920	△0.88

○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92만원이 감액(△0.88%)된 119억 7,577만 2천원으로 편성됨.

▶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음

- 모동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	⇒	7,018천원 감
- 의료장비 현대화	⇒	5,000천원 감
- 공공의약관리 운영	⇒	6,000천원 감
- 고위험군 예방접종	⇒	11,170천원 감
- 국도비 보조금 반환	⇒	73,182천원 감

[주요 편성내용]

사업명	고위험군 예방접종 (p211, p187)
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시기별 적기 예방접종으로 B형 간염, 인플루엔자 등 지역사회 감염 및 확산 방지 ○ [사업비] 53,780천원(군 53,780) ▶ 11,170천원 감 ○ [사업내용] 인플루엔자, B형간염 등 백신 구입 및 의료소모품 구입 ○ [증감사항] 약품 구입량 감소에 따른 감액
검토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인플루엔자 접종 약품비가 당초 59,150천원이었으나, 3회 추경 시 8,990천원이 줄어든 50,160천원으로 편성함. ☞ 접종 약품비의 경우 6,500개에서 갑자기 4,800개로 줄어든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※ 2023년 6,500개임

사업명	국도비 보조금 반환 (p212, p191)
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 소요 예산 편성 ○ [사업비] 186,081천원(군 186,081) ▶ 73,182천원 감 ○ [사업내용]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 ○ [증감사항] 잔액 삭감
검토의견	<p>☞ 실제 반환 금액보다 과잉편성(139%)한 것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발생시킴으로 적정 규모로 편성할 것을 권장함.</p> <p>☞ 또한, 보조금의 과도한 반환은 불필요한 보조사업을 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꼭 필요한 사업에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.</p>

□ 건강증진과

<세출예산>(예산서 P213)

(단위: 천원)

구 분	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	기정 예산액	증감액	증감률 (%)
일반회계	4,497,264	4,429,589	67,675	1.53

○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,767만 5천원이 증액(1.53%)된 44억 9,726만 4천원으로 편성됨.

▶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음
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(도자체) ⇒ **58,140천원 증 (성립전)**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 ⇒ **17,101천원 증**

[주요 편성내용]

사업명	건강증진사업관리 (p215, p195)
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지역주민 통합건강관리를 통한 건강생활실천으로 만성 질환 사전 예방 및 건강수명 연장 ○ [사업비] 373,902천원(기186,951, 도56,085, 군130,866) ▶증감없음 ○ [사업내용]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담 인건비 및 사업추진 필요 운영비 등 ○ [증감사항] 예산의 변경 사용
검토의견	<p>☞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 세부사업 동일목 내 세목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부서장의 승인으로 이루어짐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래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가 원칙이나, 불가피한 상황에 탄력성 있는 예산 운용을 위한 예외적인 제도로 볼 수 있음.

- 그러나 건강증진과의 금회 추경 3차 예산안에는 **예산의 변경 사용이 5건**으로 그 사용 빈도가 과다하며, 변경 사유는 인건비 지급, 물품 구입을 위한 세목변경 등 **예산 편성시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항들로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에 의한 변경으로 보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사례**라고 보여짐.
- 예산의 빈번한 변경은 계획성 있는 재정운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, 예산을 심의한 의회의 의사결정에 반하는 것인 만큼,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당초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, 예산변경 사례가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함.

※ 예산의 변경 내역

세부사업명	변경금액 (천원)	사 유
건강증진사업관리(p.215)	1,200	인건비 등(기간제→공무직)
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사업(p.216)	2,150	인건비, 일반보전금, 연금부담금 등
방문건강관리사업(p.218)	1,730	인건비, 연금부담금 등
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(p.220)	17,550	인건비, 일반운영비, 여비, 일반보전금, 민간이전 등
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(p.221)	21,960	인건비 등(기간제→공무직)

사 업 명	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(p217, p198)
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사업목적]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○ [사 업 비] 58,140천원(도비 50,000 군비 8,140) ▶58,140천원 증 ○ [사업내용] 산후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일정기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○ [증감사항] 도비 보조금 교부
검토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2024. 10. 15. 주례회의 시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으로 보고된 사항임. ☞ 산모 117명에 대한 영양관리, 산후체조, 좌용 등